

국토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6,695건 적발

— 위반업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6,695건(1,4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감독 철저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이같은 시정명령이 통보된 것이다.

국토부는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편집자 주]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하반기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인 총 2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 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조사를 하여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란?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